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4.

발 의 자 : 차규근 · 신장식 · 서왕진
정춘생 · 황운하 · 김준형
강경숙 · 김재원 · 이해민
김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상 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, 이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.

특히, 회사가 분할(인적분할)을 하는 경우,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대주주는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‘자사주의 마법’이라 불리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.

이에 자기주식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업이 기

업가치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.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,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,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허용함(안 제342조).
- 나.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,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함(안 제530조의10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42조(자기주식의 처분) ① 회사는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의 주식(이하 “자기주식”이라 한다)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써 소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상법」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

2. 임직원에게 대한 성과보상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

1.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

2.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

3.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

제530조의10의 제목 “(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)”를 “(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,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적용례) 제3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제3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주식(제3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소각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적용례) 제530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

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342조(자기주식의 처분) 회사가</u> <u>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</u> <u>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</u> <u>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</u> <u>이사회가 결정한다.</u> 1. <u>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</u> 2. <u>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</u> <u>납입기일</u> 3. <u>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</u> <u>분방법</u>	<u>제342조(자기주식의 처분) ① 회</u> <u>사는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</u> <u>에 따라 취득한 자기의 주식(이</u> <u>하 “자기주식”이라 한다)을 그</u> <u>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</u> <u>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</u> <u>회의 결의로써 소각하여야 한</u> <u>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</u> <u>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에</u> <u>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1. 「상법」 제340조의2에 따른 <u>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</u> <u>른 자기주식의 양도</u> 2. <u>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</u> 3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경우</u> ② <u>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기주</u> <u>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</u> <u>의 사항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</u> <u>총회의 결의 등으로 정하여지지</u> <u>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</u> <u>다.</u> 1. <u>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</u>

제530조의10(<u>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</u>) (생략) <u><신설></u>	2. <u>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</u> 3. <u>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</u> 제530조의10(<u>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,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--	---